

2020년도 충청북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 임용직위 및 직급

임용직위	임용직급	임용기간*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환경연구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3호)	2년
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2년

* 임용기간은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임용직위별 주요업무

임용직위	업무 내용
보건환경연구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감염성 질환과 발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류, 마약류, 식품류, 가검물, 축산물, 온천수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 3. 대기, 악취,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오수분뇨, 농약잔류, 하수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 4. 제조업체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 및 산업폐수 분석 업무 5.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 및 분석업무 6.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 7. 보건환경과 관련된 국책기관의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서울사무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화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4. 도정의 대외홍보, 행사지원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받게 됨.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경력요건

○ 기준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임용직위	자격기준
보건환경 연구원장 (개방형 3호)	<p>【관련학과 학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p>【공무원 경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민간 경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 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p> <p>(예) 시간제근무 경력은 주당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 × (20시간/40시간) = 2년</p> <p>관련분야: 환경·보건, 환경위해성 평가, 환경역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p>

임용직위	자격기준
<p>서울사무소장 (개방형 5호)</p>	<p>【관련학과 학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p>【공무원 경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민간 경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p> <p>(예) 시간제근무 경력은 주당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 × (20시간/40시간) = 2년</p> <hr/> <p>관련학과 : 행정, 법학, 경제, 경영, 통상, 무역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대외협력, 투자유치, 국제교류분야 근무경력</p>

- ※ **관련(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참조**

5.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직무수행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 직무관련 포상, 공직 적응능력
 (서울사무소장)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 공직 적응능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참조

○ 시험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 5. 18.(월) ~ 5. 22.(금)	5. 29.(금) 전·후	개별 통보

- ※ 충청북도 시험·채용정보 홈페이지 (<https://sihum.chungbuk.go.kr>)
- ※ 구체적인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 에서 확인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충청북도 시험·채용정보 홈페이지에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시험·채용 정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5. 18.(월) ~ 5. 22.(금) <5일간>
- 접수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주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본관 101호)
 - 전화 : 043) 220-2533, 2535, 253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응시수수료: 1만원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12:00~13:00 점심시간 제외)중에만 접수가능
-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충청북도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받을 분"은 공란)하여 우편접수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마감일(18:00) 내에 접수처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를 확인 요망

5.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천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방형 3호	-	71,940
서울사무소장	개방형 5호	82,223	46,734

-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농협 충북도청출장소 수수료 납부 후 교육고시팀에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필수
10.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은 필요시 사용 서식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 <u>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u>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u>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u>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u>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u>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u>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u>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u>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u>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기준(학위·실무경력 등의 인정범위 포함여부)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충청북도 시험·채용 정보 홈페이지 (<https://sihum.chungbuk.go.kr>)에 게시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을 반환해 드립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총무과(043-220-2533, 2535, 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